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기 관 명	동.서.남.북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일자	2020. 05. 01
급여종류	방문요양	정 원	없음
시 설 장	이영순	전화/팩스	043-237-0075 043-237-3999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월팔봉길 115(팔봉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 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 기준)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 비율

본인 부담금 내역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취급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방문요양수가1회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방문당 시간	방문요양 수가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4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할증한다.
- 나.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할증한다.
- 다. 한도액 초과로 이용 시 초과분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 한다.